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영 수
2. 범 무 범 인 세 경
3. 참 여 연 대

피 고 발 인 오 국 환 외 3명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영수

2. 범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3. 참여연대

담당실무자: 이재근(행정감시팀장)

피고발인 1. 오 국 환

2. 송 은 숙

3. 김 영 매

4. 이 강 준

피고발인 오국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수뢰죄), 피고발인 송은숙, 김영매, 이강준은 각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 및 사기죄를 각 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하오니 법에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김영수(해군소령, 군번 XX-XXXXX)는 과거(2006. 2. 8.~2006. 9. 28.)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이라 합니다)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현재 해군대학 교수부 보급일반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발인 범무법인 세경은 고발인 김영수의 의뢰로 형사변론 및 자

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으로서 이 건 고발을 담당한 법무법인이며, 고발인 참여연대는 시민운동단체로서 법무법인 세경의 요청으로 이 건 고발에 참여하게 된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오국환(예비역 대령)은 과거 해군 중앙경리단장(2004~2005), 해군본부 예산처장(2006~2007)으로 근무하다가 퇴역한 자이고, 피고발인 송은숙, 김영매, 이강준은 각 계급단에 소요비품 등 군수물자를 납품한 납품업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 오국환의 범죄행위(수뢰)

피고발인 오국환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해군본부 예산처장(해군 경리병과장)으로 재직하였는바, 군납업체 관련자로 추정되는 신중열 외 7명(성명불상자 1인 포함)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는 대가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받은 부하인 해군상사 김SS의 예금계좌(XX 00000000000000)에 금 181,045,236원을 송금하게 한 후 김SS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령하였습니다.

위 신중열 등이 김SS에게 송금한 일자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일자	송금자	금액
1	2004. 9. 14.	성명불상	20,045,236원
2	2004. 9. 17.	신AA	30,000,000원

3	2004. 9. 21.	박AA	21,000,000원
4	2004. 10. 8.	김AA	20,000,000원
5	2004. 10. 8.	송AA	20,000,000원
6	2004. 10. 15.	김AA	10,000,000원
7	2004. 12. 17.	유AA	20,000,000원
8	2005. 1. 5.	정AA	40,000,000원
		합계금	181,045,236원

위 금액은 김SS의 위 예금계좌(XX 00000000000000)로 입금된 다음 이체 당일 또는 수일 후 오국환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증거]

① 김SS상사 주요 입출금 거래내역 현황(증제1호):

김SS상사의 예금계좌추적 실제 조사결과는 국방부 검찰단(담당검찰관 보통검찰부장 육군중령 정환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② 김SS상사 유동자산 거래현황(증제2호)

③ 2009. 3. 3. 국방부 검찰단 주관 김SS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SS이 한 진술(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김SS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군납업체의 범죄 행위(사문서위조 등)

가. 피고발인 송은숙의 범죄 행위

피고발인 송은숙은 군납업체인 아미상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동인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계룡대지역 가구류 수의계약 납품과정에서 타업체(중소기업가구 C) 명의를 도용한 견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동 위조사문서를 피고발인과 사전에 통모한 구매발주부서(계근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의 담당자(해군상사 김SS)와 계약부서(해군본부 예산처 경리과)의 담당자(해군상사 김UU)에게 아미상사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견적서에 대비하여 약간 낮은 가격의 아미상사 견적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최저가 견적가 제시자가 되어 계근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위 기간 중 피고발인 송은숙(아미상사) 명의로 납품된 가구류의 납품액은 금 108,139,990원이었습니다.

[증거]

- ① 피고발인의 견적서 및 함께 제출된 허위 또는 위조견적서(증제3호증의1-3)
- ② 국방부 조사본부가 2007년 4월-6월 사이에 피고발인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피고발인이 타업체명의로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발인의 견적서와 시장가격의 차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편취금액)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당시 국방부장관(김장수)에 보고한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김영매의 범죄 행위

피고발인 김영매는 군납업체인 신성을 경영하는 자인바, 동인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계룡대지역 전자제품 수의계약 납품과정에서 타업체(엘지에이씨 K, (주)삼성디엔디) 명의를 도용한 견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동 위조사문서를 피고발인과 사전에 통모한 구매발주부서(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의 담당자(해군상사 김SS)와 계약부서(해군본부 예산처 경리과)의 담당자(해군상사 김UU)에게 신성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견적서에 대비하여 약간 낮은 가격의 신성의 견적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최저가 견적가를 제시한 자가 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위 기간 중 피고발인 김영매(신성) 명의로 납품된 가구류의 납품액은 금 134,884,700원이었습니다.

[증거]

- ① 피고발인 견적서 및 함께 제출된 엘지에이씨(K), (주)삼성디엔디 명의의 위조견적서(증제4호증의 1-9)
- ② 국방부 조사본부가 2007년 4월-6월 사이에 피고발인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피고발인이 타업체명의로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발인의 견적서와 시장가격의 차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편취금액)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당시 국방부장관(김

장수)에 보고한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이강준의 범죄 행위

피고발인 이강준은 군납업체인 팀퍼니처를 경영하는 자인바, 동인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계룡대지역 가구류 수의계약 납품과정에서 타업체(중소기업가구 C, 태영사무용가구 M, 대성가구 Y, Talento 서대전전시장(대신가구) T) 명의를 도용한 견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동 위조사문서를 피고발인과 사전에 통모한 구매발주부서(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의 담당자(해군상사 김SS)와 계약부서(해군본부 예산처 경리과)의 담당자(해군상사 김UU)에게 아미상사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견적서에 대비하여 약간 낮은 가격의 팀퍼니처 견적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최저가 견적자 제출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위 기간 중 피고발인 이강준(팀퍼니처) 명의로 납품된 가구류의 납품액은 금 303,778,802원이었습니다.

[증거]

① 피고발인의 견적서 및 함께 제출된 중소기업가구 C, 태영사무용가구 김승민, 대성가구 김성열, Talento 서대전전시장(대신가구) 양태식 명의의 각 위조견적서(증제5호증의 1-23)

② 국방부 조사본부가 2007년 4월-6월 사이에 피고발인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피고발인이 타업체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발인의 견적서와 시장가격의 차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편취금액)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당시 국방부장관(김장수)에 보고한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건 고발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군내부자에 대하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2007년 4월-6월 사이에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예산 9억 4천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6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 온 내용을 국가청렴위가 고발인 김영수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증제6호).

또한 이 사건은 군사관련 권위지인 “군사세계(軍事世界)” 2009년 4월 판에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증제7호).

5. 결 론

이상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범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고발인: 1. 김 영 수

2. 범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 창 준

3.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이 재 근

대전지방검찰청 귀중